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93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윤준병・문대림・송옥주
임호선・주철현・박용갑
이병진・유동수・임미애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은 30년 이내로 함(안 제5조).

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를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

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영농형 태양광 생산 전기 우선구매 시책 마련,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송·배전설비,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 등이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

파. 사업계획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와 부지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농지의 복합이용으로 보며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시설로 본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란 제1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특별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허가 등

제5조(사업계획의 허가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상 읍·면에 주된 사무소가 설립등기된 자로서 직접 소유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임차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법인
3.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또는 마을공동체(이하 “주민참여조합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농지(이하 이 조에서 “염지(鹽地)”라 한다)

2. 주민참여조합등의 경우: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 농지나 염지(鹽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6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65세 이상의 노령,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 지정 등

제11조(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를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이하 “발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특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보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발전지구 조성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특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 지정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내에 발전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로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전특구의 지정에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면적을 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 또는 소유하는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등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형 태양광 생산 전기 자가소비 보장 및 우선구매)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라 허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생산자인 농업인,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등의 자가소비

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한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송·배전설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 및 발전시설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의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배전설비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준시

설 및 설치 규격과 표준시설 내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3.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조합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차인 보호 등

제21조(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사용면적(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농업 생산량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예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제5조의 사업계획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